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48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총괄적 검토	3
2. 각 법률별 검토의견	10
1) 폐기물관리법	10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
3) 물환경보전법	28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50
6) 지하수법	59
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66
8) 자연환경보전법	72
9) 안 부칙	75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

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총괄적 검토

행정이란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활동 및 내부 관리 등으로, 이러한 행정의 권한을 그 책임 하에 행사하는 행정주체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음.

행정주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구역 내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주체 간 권한과 책임의 구체적인 배분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권한,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3) 관할 구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사무의 범위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됨(§13).²⁾

1)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을 규정하고(§11·14),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종류를 열거(§15)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관한 원칙도 정하고 있음.³⁾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는 관할 지역의 주민생활 및 복리증진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무(자치사무)이나, 법령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위임되면 해당 사무도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 권한이 국가에 부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된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3)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하 각 호 생략)

또한, 기술진보 및 사회발전 등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지역 단위의 주민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및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무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각 지역 주민의 고유한 수요를 업무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행정의 효율성도 저해된다는 의견도 있음.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있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것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앙행정사무 및 권한의 지방이양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 등에 대한 권한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음.

또한, 2013년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이 제정되어⁴⁾, 자치분권의 이념⁵⁾과

4) 동 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통합('23.7.10)되어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5) 舊지방분권법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른 국가의 권한이양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⁶⁾되고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⁷⁾ 법률 제정 이후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2018년에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1월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약 400여 종류의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바 있음.

6) 舊지방분권법 제9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7)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임

舊지방분권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제4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앙집권적 성장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확대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과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환경 분야의 사무 또한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환경부장관의 권한 하에 수행되던 환경사무 중 상당수가 지방이양되었고,⁸⁾ 사무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권한의 합리적 재배분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⁹⁾에 대한 권한 확대도 추진되었음.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경사무의 경우 지방이양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그 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환경사무의 추가적인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환경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⁰⁾

8) 2020년 12월 기준 정부 차원에서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한 556개 사무 중 390개 사무가 이양완료된 것으로 확인됨.(「환경부 소관 사업 중 지방이양사무의 행정집행 적정성 평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연구, 2021.)

9)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98조)

10) 참고로, 개정안의 개정사항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舊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와 관련하여 심의·의결된 내용 중 일부임.

[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대상 법률명	개정사항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군·구청장에게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 취소, 인수 허가 등 권한 이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권한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
물환경보전법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과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 확인 사무 이양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교육계획 수립 권한을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 및 청문 실시 권한 조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후관리, 청문,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등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
지하수법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 권한 이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 부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사무 주체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

위의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한편, 현재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 중 일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려는 것으로, 환경사무와 관련된 행정권한의 배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따라 국가의 환경사무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대도시의 장 등에게 새롭게 권한이 부여될 경우 지방자치분권이 확대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행정의 주민만족도 및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방이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사무가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고¹¹⁾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약해져¹²⁾ 사무가 충실히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환경사무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그 대응을 위해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권한 행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 중앙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 환경오염 등에 대한 국가 단위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법률별(조항별)로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1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이하 생략)

12)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은 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기 때문임.

「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각 법률별(조항별) 검토의견

1)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등 관리·감독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제27조의2, 제33조, 제37조, 제45조 및 제61조).

[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u>환경부장관</u>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 ----- ----- ----- -----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 ----- ----- ----- ----- -----.
② <u>환경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 -----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 ⑧ (생략)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9. (생략)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1. ~ 9. (현행과 같음)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

-----.

③ -----

-----.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

-----.

1. ~ 3.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

-----.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

-----.

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생략)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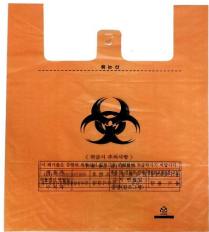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 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 <u>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u> 제61조(청문)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등의 전산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u> ----- ----- ----- ----- ----- ----- ----- ----- ----- 제61조(청문) <u>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u> ----- ----- 1. ~ 7. (현행과 같음)
---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함)는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¹³⁾를 의미하며, 현행법¹⁴⁾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1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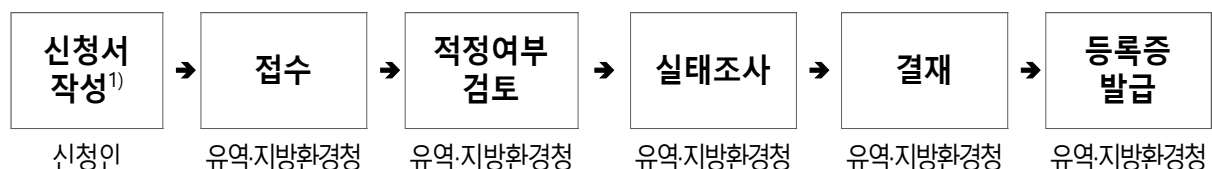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골판지 전용용기

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은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환경청)에게 등록하도록 하고¹⁵⁾¹⁶⁾,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등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용용기 제조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6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제2항¹⁷⁾에 따라 해당 업무는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¹⁸⁾에 위임되어 있음¹⁹⁾.

- 14)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6) 참고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90개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업체가 운영 중에 있음.
-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18)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 1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절차



－ 신청인은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장비 등의 요건(시행규칙 별표 8의2)을 갖추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를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① 시설·장비 명세서, ②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원료·재질 설명서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함으로써 전용용기 제조업 관리·감독의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표] 개정안에 따른 이양 대상 사무

-
-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 등록 등(제25조의2)
 -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및 영업 정지명령(제27조의2)
 -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한 허가(제33조)
 -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법인 합병·분할 시 허가(제33조)
 -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사망 시 상속 신고 접수(제33조)
 -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대한 허가·신고 시 처리 결과의 통보(제33조)
 -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휴·폐업 신고 수리(제37조)
 - 폐기물 전용용기 생산·판매량 등에 대한 전산기록 자료 요구(제45조)
 -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제61조)
-

환경부에 따르면,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가 이미 현행법 제6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제1항20), 시·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 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 다.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문 요청
- 마. 법 제48조의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바.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비용징수 및 필요한 조치

전용용기 제조업의 관리·감독 업무가 시·군·구로 이양될 경우 의료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시·군·구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부적합 전용용기가 적발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의료폐기물²¹⁾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국민보건 상 감염 등 대규모 위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전용용기 제조업에 대해서도 구조, 규격, 품질 및 표시 등에 있어 부적합한 전용용기가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의료폐기물의 처리 수요에 따라 전용용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²²⁾.

둘째, 현행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²³⁾에 따르면 국가

2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2)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규격·품질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이양하더라도 전국 동일 기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제조업 등록 업무를 진행할 시 신속·효율적인 업체 관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임.

23)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의 관리·감독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에 의료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현재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음),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관리·감독,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등 관리·감독 등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생활폐기물 또는 일반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4년 현행법 제25조의2를 신설할 당시에도 부적합 전용용기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환경부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당초 시·도지사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등록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수정된 바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전용용기 제조업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현행법 상 관리·감독 체계,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제도 도입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및 공고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광역지자체장에게 이양하고(안 제11조의3 및 안 제12조), 지역개발계획 반영 요청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며(안 제19조), 권한·업무의 이양에 따라 관련 위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u>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 ----- -----.
<신설>	1.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u>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환경부장관

2.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③ -----
----- 제2항제1호 -----
-----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중 한 개 이상의 신문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

④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u>제11조의3제3항</u>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면허 및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16. (생략) ② <u>환경부장관</u>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환경부장관</u>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생략)	<u>신문 중 한 개 이상의 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u>제11조의3제3항 또는 제4항</u>----- ----- ----- ----- ----- ----- --. 1. ~ 16.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 ----- ----- ----- ----- ----- <u>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u>----- ----- ----- -----.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u>환경부장관이나</u>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 <u>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u> ----- ----- ----- ----- ----- ----- -----.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u>지방환경관서</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²⁴⁾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지를 선정하여 결정·고시한 후²⁵⁾ 폐기물처리시

24)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생략)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25) 법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설 설치계획²⁶⁾을 수립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기초지자체장인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이 현행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음.²⁷⁾

한편, 현행법 제11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후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²⁸⁾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²⁹⁾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³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6) 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공장·관광지·관광단지 등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계획은 제외함(법 제9조제1항 참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설치하는 경우와 별개의 것임.
- 27) **법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28) 주변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을 의미하며,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됨.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설치기관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수된 토지는 주민편익시설, 녹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 등을 위한 벽 설치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함(법 제17조 참조).
- 29) **법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30) **법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개정안은 현재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기초지자체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이양하고, 이와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 및 지역개발 계획 반영 요청 권한 또한 광역지자체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기초지자체가 수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 등의 사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이며, 광역지자체에서 각 기초지자체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대응성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광역지자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자율적으로 승인하게 될 경우 지자체별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난립으로 광역적 폐기물 처리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별 설치 승인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과잉 설치되어 가동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8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³¹⁾ 제정 논의 시, 우리 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

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1)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016093호, 정부 제출)

치계획 승인 사무를 광역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소규모 위주의 시설
난립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 등 정부 정책 차질 및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해당 사무의 지자체 이양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
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행 규정상 기초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계획 등에 대한 승인 권한은 광역지자체로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는 현재와 유사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고 보조 시, 지역의 폐기물발생량, 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과잉설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임.

3)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기타수질오염원³²⁾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관리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특례시장에게 이양하고(안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인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³³⁾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시·도지사로부터 하역금 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환경부장관</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 ----- ----- <u>시·도지사·특례시장</u> ----- --. ----- -----.

32)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임.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② 시·도지사·특별시장-----

-----.

③ 시·도지사·특별시장-----

-----.

-----.

④ 시·도지사·특별시장-----

-----.

⑤ 시·도지사·특별시장-----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
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
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
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
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
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
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도지사·특별시장-----

-----.

⑧ 시·도지사·특별시장-----

-----.

⑨ (현행과 같음)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골
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의

<u>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u>사용 및 잔류 여부를 매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u>
--------------------------------------	--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³⁴⁾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수질오염원³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제한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골프장의 경우 현행법상 기타수질오염원의 한 유형으로, 골프장에서 각종 용도로 사용되는 용수 및 잔디와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이 하천·호소 등에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현행법은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로 하여금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방지·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S 60$),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34)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5)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61), 골프장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골프장 수질오염 관리 관련 규정]

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u>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② ~ ⑤ (생 략) ⑥ <u>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법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u>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u>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그 중 환경부장관의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의 확인은 골프장 설치·관리자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농약사용량에 대한 조사와 농약잔류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며,³⁶⁾ 조사 및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³⁷⁾하도록 하고 있음.

36) **법 시행규칙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9-6호)

그런데 골프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위치하고 있어³⁸⁾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인력 운용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확인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관리 권한을 시·도·특례시장에게 이양하고,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합리적 배분 및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즉, 지방자치법³⁹⁾에 따르면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하고, 배분 시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 확인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8)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539개소가 운영 중임(환경부)

39)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또한,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일종으로 수질오염과 자연환경 보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지사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⁴⁰⁾ 설치 이후 농약 사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경우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물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의 기타 수질 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과 농약 사용 확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⁴¹⁾ 권한의 위임을 통해 골프장 농약 사용의 확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분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1) 법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 참고자료: 기타수질오염원 제도 개요⁴²⁾

□ 용어 정의

- 기타수질오염원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물환경보전법제2조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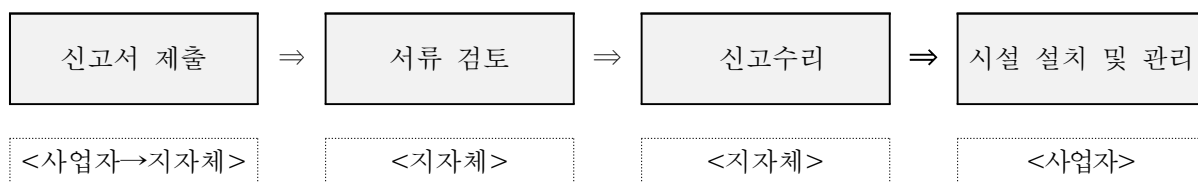
□ 현 황

- '91년 제도 도입(4종) 이후 현재 31,344개 사업장('21년 기준, 8개 업종)에서 신고·운영 중

※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장소)

□ 신고 및 의무사항

- (신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지자체 위임)에게 사전 신고



※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거점소독시설

- (조치사항)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
- (위법시설) 개선명령 및 이를 위반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42) 자료: 환경부

※ 참고자료: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기타수질오염원 시설별 현황

구분	사업장수
계	31,344
수산물 양식시설	3,228
골프장	502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9,315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2,216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7,215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528
안경원	8,284
복합물류터미널 시설	3
거점소독시설	53

※ 출처 : 2022년도(2021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2023.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기타수질오염원 지역별 현황

구분	사업장수
계	31,344
서울특별시	3,989
부산광역시	1,400
대구광역시	1,035
인천광역시	1,066
광주광역시	840
대전광역시	655
울산광역시	451
세종특별자치시	170
경기도	7,106
강원도	1,107
충청북도	1,493
충청남도	1,802
전라북도	1,994
전라남도	3,326
경상북도	1,821
경상남도	2,372
제주특별자치도	717

※ 출처 : 2022년도(2021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보고서(2023.2.,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 참고자료: 골프장 농약 사용량 조사 및 잔류량 검사 제도
세부 내용⁴³⁾

□ (조사목적) 골프장 농약 사용실태(사용량 등) 및 잔류량 검사로
맹·고독성 농약 사용 방지 및 안전사용기준 준수 유도

- ※ 문체부('94년~), 환경부('06년~) 개별 조사→ 환경부로 조사 일원화('11년~)
- ※ 조사결과는 관계 기관(시·도 등)에 통보되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농약 사용량은 일반에 공개됨(잔류량은 별도 공개)

□ (조사근거)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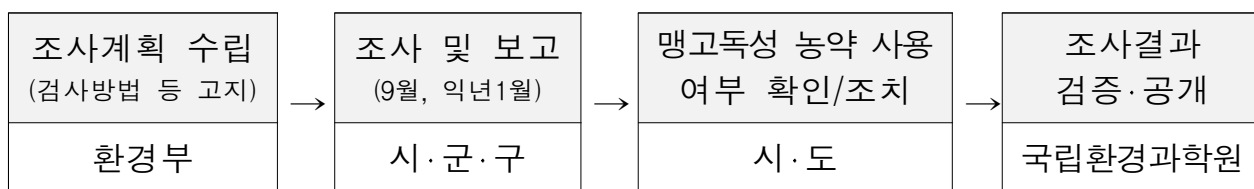
- ※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9-6호)에 따라 농약 사용량·잔류량 검사 등 실시

□ (대상·주기) 전국 골프장('19년 기준 539개소) · 상·하반기(연 2회)

□ (조사내용) 연간 농약 사용량 (품목 등 포함), 잔류량 등

- (사용량 조사) 연간 농약 사용량 및 품목 조사
- (잔류량 검사) 토양시료(그린·페어웨이) 및 수질시료(유풀구, 연못)을 대상으로,
농약 30종(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포함) 잔류량 조사·확인
- ※ 토양시료 채취 지점수 : 홀수에 따라 골프장별 4지점(18홀 미만)~18지점(72홀) 이상
- ※ 수질시료 채취 지점수 : 반기별 골프장별 3지점(유풀구 1개, 연못 2개) 이상

□ (조사절차) 시군구 조사·보고(연2회) 및 과학원 검증 및 공개



43) 자료: 환경부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환경교육계획 수립권자 확대 등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대도시의 지역 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②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계획-----

-----.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 지역계획-----

-----.

② -----

-- 지역계획-----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역계획-----
-----.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

지역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4.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시·도의 지역계획 -----

3. 4. (현행과 같음)

② -----
----- 말한다. 이하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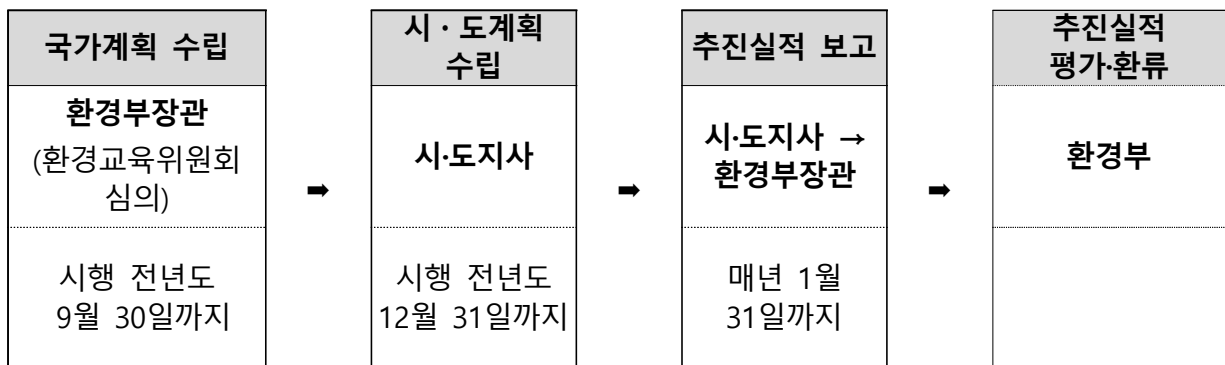
-----.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계획을⁴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지역상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환경교육계획을⁴⁵⁾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 환경교육계획 또는 시·도 환경교육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⁴⁶⁾

[표]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보고 절차



※자료: 환경부

한편,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인구 규모 및 교육 수요가 크므로, 교육 수요 대응성 제고 및 대도시 지역 특화 환경교육을 위하여

44) 법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5) 법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법 제7조(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도 환경교육계획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⁴⁷⁾할 필요성이 제기됨.⁴⁸⁾

이에 개정안 제6조 및 제7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관할 지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소관 업무에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의 장이 독자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대도시의 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인 환경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⁴⁹⁾

한편, 경상남도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환경교육계획과 유사한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들의 유사 중복 및 이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⁵⁰⁾

개정안 제9조 및 제25조는 개정안 제6조에 의하여 시·도의 환경교육계획과 대도시의 환경교육계획을 “지역계획”으로 통칭하게 됨에 따라, 법상 “시·도계획”을 “지역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47) 참고로, 일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구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교육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8) 기초지자체 69곳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는 수원시(2012.11.14.), 성남시(2016.3.25.), 안산시(2019.07.19.), 천안시(2017.12.29.) 등이 이에 해당함.

49) 참고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성남시와 수원시 등 11곳은 이미 자체적으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성남시는 제2차, 수원시는 제3차, 안산시 등 9곳은 제1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운영 중임.

50) 본 의견은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8년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016093호, 정부 제출) 제정 논의 시 제출되었음.

나.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및 청문 실시권자 조정 등

개정안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권자 및 청문 실시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 시 환경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1조 및 제32조).

[표]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u>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u>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u>

② (생략)

제31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
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
교육센터

3. ~ 5. (생략)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
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 4. (생략)

5. 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
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의 지정취소

<신설>

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
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는 -----
-----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
-----.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
경교육센터

3. ~ 5. (현행과 같음)

제32조(청문) ① -----

처분-----

-----.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
경교육센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	---

현행법상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⁵¹⁾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⁵²⁾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함)를 지정할 수 있음.⁵³⁾

한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

51) **법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에 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52) **법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53) **법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등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함.⁵⁴⁾

그런데 현행법 제26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정하고 있어,⁵⁵⁾ 환경교육센터 지정권자와 지정취소권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현행법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지정취소에 대해서는 협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인데 반면,⁵⁶⁾ 지정취소처분 시의 청문 실시권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54) **법 제3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취소
5. 제26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55) **법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6) **법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권자 및 지정취소권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청문실시권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분권자와 청문실시권자가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③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취소 시의 청문 실시권자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환경교육센터 및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권자·지정취소권자 및 청문 실시권자를 일치시키고, 교육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상 미비점 보완 및 법령 정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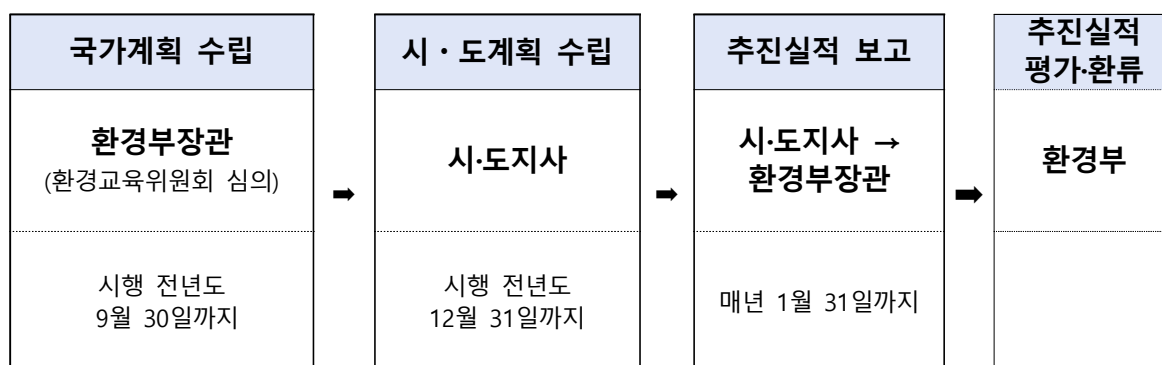
※ 참고자료: 국가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개요⁵⁷⁾

□ 계획수립 개요

- **(계획명)** 국가환경교육계획(환경부), 시·도환경교육계획(시·도지사)
- **(수립시기)** 매 5년마다
- **(평가·환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시 반영
- **(포함내용)** 환경교육의 목표, 기반구축, 주요 내용 등

국가계획	시·도계획
○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 환경교육의 현황 ○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 국가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강화 시책의 수립·시행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 시·도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 시·도계획 추진 재원조달 방안

<참고 : 국가계획·시·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 절차>



57) 자료: 환경부

※ 참고자료: 50만 이상 대도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현황⁵⁸⁾

□ 총 19개 대도시 중 11개시가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번	지자체	환경교육조례	환경교육계획
1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2021. 7. 1.일부개정)	○ (3차, '22~'25)
2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 12. 9.일부개정)	○ (1차, '21~'25)
3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2023. 12. 29.일부개정)	○ (1차, '21~'25)
4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11. 15.제정)	○ (1차, '23~'25)
5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8. 7.일부개정)	○ (2차, '22~'25)
6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 12. 26.일부개정)	○ (1차, '22~'25)
7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 9. 21.전부개정)	○ (1차, '21~'25)
8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2023. 6. 29.일부개정)	○ (1차, '21~'25)
9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12. 29.제정)	○ (1차, '25~'30)
10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9. 22.일부개정)	○ (1차, '24~'28)
1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3. 30.일부개정)	○ (1차, '22~'25)
12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 2. 20.일부개정)	-
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5. 12.제정)	-
14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2. 10. 5.제정)	-
15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2020. 7. 15.제정)	-
16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2024. 8. 1.제정)	-
17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 11. 1.제정)	-
18	전라북도 전주시	-	-
19	경기도 김포시	-	-

58) 자료: 환경부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⁵⁹⁾이라 함)의 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권자의 범위를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제28조, 제30조, 제37조).

[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u>특별시·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 -----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u> ----- ----- . ----- .

59) 법 제2조(정의)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⑥ (생략)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

② -----

-----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

-----.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

-----.

1. ~ 9.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① -----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제37조(과태료) ①·② (생략)

-----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청문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제 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 시</u> <u>· 도지사가</u> 부과·징수한다.	③ ----- ----- ----- ----- ----- ----- <u>따라 시</u> <u>· 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u> --- -----.
--	---

현행법상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인 환경전문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함)는⁶⁰⁾ 법 시행령 제22조의4⁶¹⁾에서 정하는 전담기술인력 및 실험기기 등 기술능력⁶²⁾을 갖춘 경우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⁶³⁾

60) 2020년 12월 현재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별 총 1,206개 업체가 등록되어있으며, 분야별로는 대기 591개, 수질 773개, 소음·진동 70개임(합은 1,434개이나, 한 업체가 여러 환경 분야에 등록할 수 있어, 등록 업체수와 분야별 등록 업체수 합 간 차이 존재함). 참고로, 2011년에는 1,085개, 2016년에는 1,031개 업체가 등록되어있었음.

61) 법 시행령 제22조의4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다. 소음·진동 분야: 3명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62) 기술능력은 기술인력과 실험기기로 구분됨. 공사업자는 기술사와 기사를 포함한 4명 이상(대기, 수질 분야), 기술사와 기사를 포함한 3명 이상(소음, 진동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BOD, COD, SS 등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구비해야함(법 시행규칙 별표4)

63) 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 법 제15조제5항의 사유⁶⁴⁾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음.

또한,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⁶⁵⁾ 공사업자가 이를 거부·방해 및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법 제37조제3항).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등록된 분야별 환경전문공사업 업체 수가 특정 광역시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 등⁶⁶⁾ 대도시에서의 환경전문공사업 관련 행정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도시 차원에서 사무처리를

64) 법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이하 생략)

65) 법 제28조(사후관리) ③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제50조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66) 광주광역시(17개), 대전광역시(25개), 울산광역시(21개)인 반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인 화성시(54개), 안양시(37개), 청주시(37개), 안산시(59개) 등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체 수가 광역시보다 많은 경우가 있음(2023.12월 말 기준 2023년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현황, 환경부)

할 필요성이 제기됨.⁶⁷⁾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시·도지사의 사무로 되어있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등록취소·검사·과태료 징수 등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이 관할 지역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도시에 소재한 사업장 시설 및 기술 능력 검사 시 특이점이 발견됐을 때 대도시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대도시에서 공사업 등록 및 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67) 유사한 취지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 측정대행업에 대한 등록, 등록 취소 등을 하도록 2017년 12월에 개정하였음.

※ 참고자료: 환경전문공사업 개요⁶⁸⁾

□ 개요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6조·제28조
- (현황) 대기, 수질, 소음·진동 분야별 총 **1,262개** 업체 등록('23.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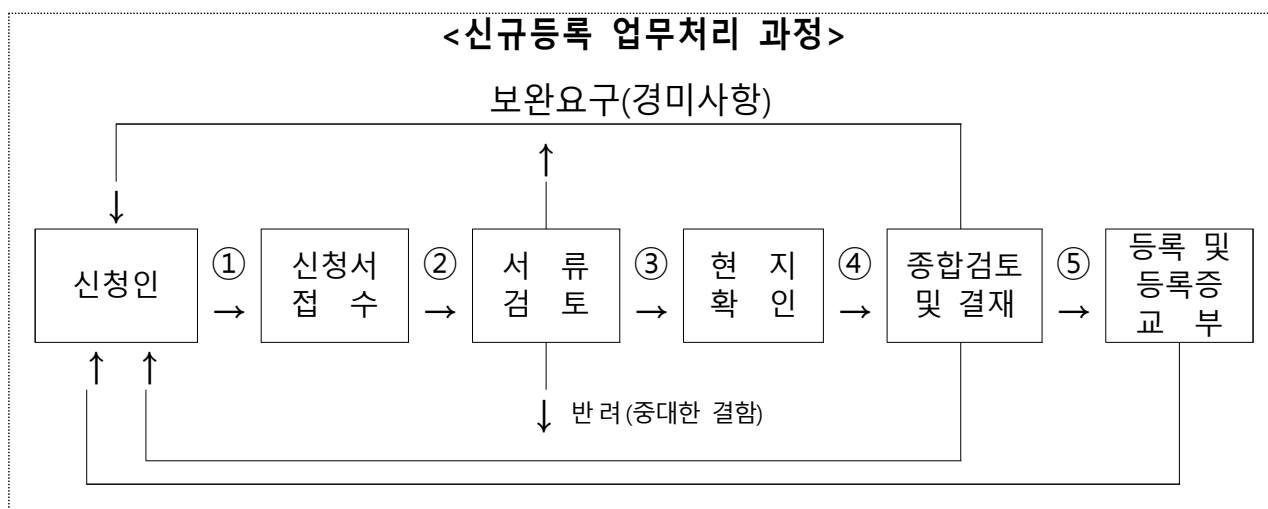
<분야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현황>

등록 업체*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1,262	1,521	675	780	66

* 한 업체가 여러 환경 분야에 등록할 수 있어, 등록 업체수와 분야별 등록 업체수 합간 차이 존재

□ 등록 및 관리

- (등록대상) 환경전문공사(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
- (등록기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등록요건) 기술인력(대기, 수질, 소음·진동) 및 실험기기(수질 분야) 보유 필요
 - (기술인력) 기술사·기사 포함 4명 이상(대기, 수질 분야), 기술사·기사 포함 3명 이상(소음·진동 분야)
 - (실험기기) BOD, COD, SS 등을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실험기기(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시 인정)



68) 자료: 환경부

- (의제요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기술사법」 제6조)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시 의제 처리

<기술사사무소 등록 요건>

- 기술사 1명 이상, 사무실

※ (합동기술사무소 개설 경우) 운영규약, 보조 기술인력 3명 이상 필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요건>

- (엔지니어링업)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기술자 3명 이상, 사무실 확보
-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 (관리) 시·도지사가 등록요건, 등록증 대여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환경전문공사업 수주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 보고
- (등록취소) 등록 후 2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계속 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증 대여, 부실 환경전문공사, 일괄 하도급의 경우

□ 제도 연혁

- 각 개별법에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00.8)

<제도 명칭 변경·통합 사항>

당 초		변 경	
법률	업종명	법률	업종명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방지시설업	환기환산법	(대기분야)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방지시설업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소음·진동분야)환경전문공사업

-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관리업무를 시·도로 이양('05.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 명칭 변경 및 환경전문공사업으로 명칭 변경('11.10)
- 환경전문공사업 업무편람 마련·배포('22.12)

※ 참고자료: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시도별·분야별)69)

(단위: 개소)

시도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록현황 (중복제외)	비율(%)			
서울특별시	181	14.4	87	113	32
부산광역시	42	3.2	28	20	1
대구광역시	36	2.9	24	24	0
인천광역시	70	5.6	50	34	3
광주광역시	17	1.3	12	7	1
대전광역시	25	2.0	14	13	2
울산광역시	21	1.7	19	5	0
세종특별자치시	3	0.2	0	3	0
경기도	427	33.8	245	234	19
강원도	37	2.9	7	31	0
충청북도	67	5.3	27	51	0
충청남도	54	4.3	22	38	3
전라북도	39	3.1	18	32	0
전라남도	51	4.0	24	37	1
경상북도	70	5.6	42	51	3
경상남도	113	9.0	55	79	1
제주특별자치도	9	0.7	1	8	0
계	1,262	100.0	675	780	66

※ 한 업체가 여러 환경 분야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어, 등록업체수 합과 환경 분야별 업체수의 합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등록업체수≠[대기+수질+소음·진동])

69) 자료: 환경부

6) 「지하수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4항).

[표]지하수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u>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u>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 ----- ----- ----- <u>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u> ----- ----- -----.
③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	④ ----- ----- ----- ----- ----- -----

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u>시·도지사에게</u>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u>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u>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로, 현행법은 적절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⁷⁰⁾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계획의 수립 근거를 두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지하수의 이용·보전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⁷¹⁾

70)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절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1) **법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시·도 단위의 지역관리계획 외에, 특정 지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의 지하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군·구 단위의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환경부장관에게 그 하위계획에 해당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 지역관리계획의 승인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경우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위 계획은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지역관리계획이라는 점에서, 시·군·구 단위의 지역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계획 간 연계성 강화의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시·군·구 단위의 지역관리계획은 지하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수립되는데, 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하수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의적절한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문제제기도 있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으로, 시·도 지역관리계획과 시·군·구 지역관리계획 간 연계성 확보와 지하수 장해에 대한 신속한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수 장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도 지역관리계획과의 정합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되며,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도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6조의2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계획의 수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리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⁷²⁾

□ (개요)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0년 단위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수립(「지하수법」 제6조)

○ 제3차 수정계획(2017~2026) 이후, 물관리 일원화(2018), 「물관리 기본법」 제정(2018) 등의 정책을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 비전, 목표 및 분야별 추진전략



72) 자료: 환경부

※ 참고자료: 지역지하수관리계획 개요⁷³⁾

○ **(계획의 성격)** 「지하수법」에 따라 수립하는 지자체 지하수 관리의 최상위 계획

○ **(수립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하수법」 제6조의2)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의무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포함내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7조의2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계획 변경의 경우만 해당)

○ **(타 계획과의 관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관리기본법 제28조)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지하수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
타 법에 의한 지하수 관련 계획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농림축산식품부), 온천발전종합계획(행정안전부) 등 타 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계획

73) 자료: 환경부

※ 참고자료: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현황⁷⁴⁾

○ 80개(시·도 17, 시·군 63) 지역이 계획 수립 완료(24년), 7개 지역은 수립 중

【 연도별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현황 】

구 분	수립지역(연도)	개 수 ^{주)}
특·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도	서울(2017), 부산(2015), 대구(2017), 인천(2017), 광주(2019), 대전(2017), 울산(2017), 제주(2018), 세종(2015), 강원(2016), 경기(2015), 충북(2019), 충남(2019), 전북(2020), 전남(2017), 경북(2019), 경남(2015)	17
강원도 (18개 시·군)	춘천(2022), 원주(2009), 횡성(2023), 홍성군(수립중)	3 [1]
경기도 (31개 시·군)	수원(2013), 부천(2022), 고양(2021), 안양(2011), 평택(2019), 안산(2019), 구리(2017), 남양주(2015), 하남(2019), 파주(2022), 시흥(2017), 이천(2015), 안성(2016), 김포(2014), 화성(2022), 군포(2015), 포천(2018), 여주(2018), 양평(2020)	19
충청북도 (11개 시·군)	청주(2014), 충주(2022), 제천(2020), 옥천(2015), 보은(2017), 진천(2023), 괴산(2016), 음성(2015)	8
충청남도 (15개 시·군)	천안(2017), 아산(2014), 서산(2018), 당진(2014), 태안(2017), 공주(2024), 논산(2022), 홍성(수립중), 부여(수립중), 금산(수립중)	8 [3]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주(2014), 김제시(수립중)	1[1]
전라남도 (22개 시·군)	나주(2022), 광양(2017), 무안(2016), 여수(2023), 순천(2023)	5
경상북도 (23개 시·군)	안동(2021), 구미(2020), 경산(2020), 청송(2022), 영양(2021), 고령(2022), 칠곡(2021), 포항(수립중), 군위(수립중)	7 [2]
경상남도 (23개 시·군)	창원(2023), 통영(2011), 사천(2021), 김해(2013), 양산(2020), 의령(2010), 함안(2020), 산청(2022), 울산울주(2019), 거제(2023), 진주(2023), 밀양(2024)	12
합 계		80[7]

주) [] 안의 숫자는 현재 수립 추진 중인 지역 개수

74) 자료: 환경부

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① <u>환경부장관</u> 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u>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의3은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자를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⁷⁵⁾

7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특정도서 명예감시원)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특정도서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법 하위법령⁷⁶⁾에서는 환경부장관의 명예감시원 위촉 권한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있는데,⁷⁷⁾ 현재 전국 260개 특정도서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관련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2명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특정도서 내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7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② 환경부 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7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2. 특정도서 안에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3. 그 밖에 특정도서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표] 2024년 지방환경관서별 관할 특정도서 및 명예감시원 운영현황

구 분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특정도서 수	260	33	47	31	132	0	1	16
명예환경 감시원 수	27	3	7	1	14	0	0	2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 시·군·구	-	웅진2, 강화1	통영4, 사천1, 거제1, 고성1	보령· 서천1	여수2, 완도5, 신안4, 남해1, 하동1, 제주1	-	-	군산1, 부안1

※자료: 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명예감시원의 운영이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도 관할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함으로써 주민협력에 기반하여 특정도서의 보전업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⁷⁸⁾에서는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78)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관할 지역의 환경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위촉권한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동사무로 규정하는 경우, 각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권한 및 사무의 중복이 발생하여 제도 운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⁷⁹⁾.

둘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명예감시원 위촉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조례로 정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명예감시원의 활동 목적이 되는 독도 등 특정도서의 보전에 관한 업무는 대표적인 국가사무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셋째, 현행법 시행규칙⁸⁰⁾은 명예감시원의 자격 또는 위촉기준으로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회원 중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

79)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군에서 직접 위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련 행정 수요 대응이 가능하나, 업무를 시군구로 완전히양 시 지자체의 예산부족, 업무해태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운용목적인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공동사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8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4(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활동범위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회원 중에서 해당 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가 속한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3.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환경관서의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추천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이 명예감시원의 위촉업무의 현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자료: 특정도서 지정 및 명예감시원 운영 현황⁸¹⁾

□ 지역별 특정도서 지정현황

구 분	계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도서수	260	3	31	2	31	108	16	62	1	6
면적(천㎡)	13,840	30	1,674	26	2,253	5,798	1,642	1,762	188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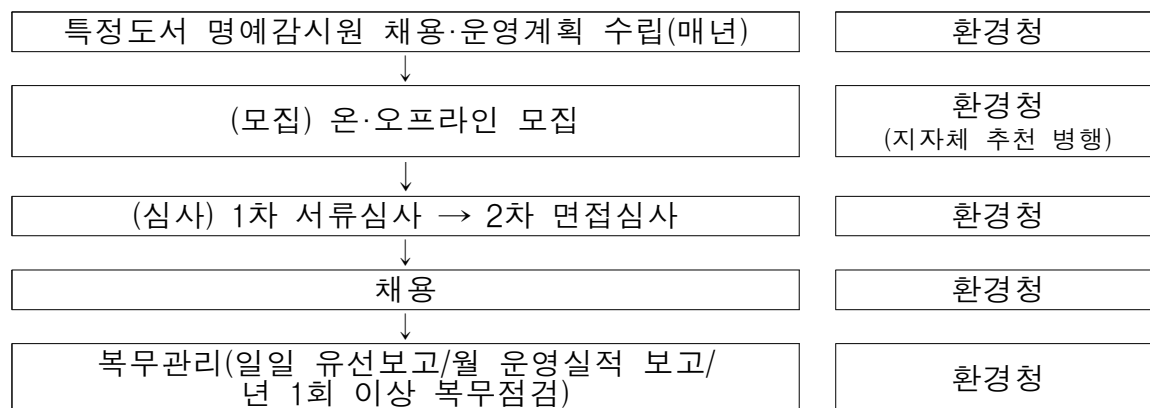
□ 환경청별 관할 특정도서 및 '24년 명예감시원 운영현황

구 분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특정도서수	260	33	47	31	132	0	1	16
명예환경감시원 수	28	3	7	2	14	0	0	2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시·군·구	-	웅진2, 강화1	통영4, 사천1, 거제1, 고성1	보령· 서천1, 태안· 서산1 (채용절차 진행 중)	여수2, 완도5, 신안4, 남해1, 하동1, 제주1	-	-	군산1, 부안1

□ 명예감시원 임무 및 위촉기준

- (주요임무) 특정도서 보전을 위한 감시·홍보 업무
 - 특정도서 내에서의 야생생물 불법포획·채취행위, 자연환경 훼손행위, 쓰레기 투기, 취사·야영행위 등 감시·신고 및 특정도서 홍보 등
- (위촉기준)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법적으로 정상적 운항이 가능하며 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특정도서 및 그 주변지역(특정도서에 인접한 읍·면·동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자연환경보전에 지식이 있는 자

□ 명예환경감시원 채용·운영 절차



81) 자료: 환경부

8)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을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⁸²⁾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 <u>시·도지사는</u>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 증진 등을 위하여 <u>시·도지사 소속하에</u>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 <u>시·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u> 은 ----- <u>시·도시사와 대도시의 장</u> 소속으로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0조는 1980년 내무부의 전국자연학습원 조성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자연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설립된 전국 8개 시도에 건립된 자연학습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임.

82)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총 9개의 자연환경학습원이 설치되어 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

[표] 자연환경 학습원 설치현황

명칭	직원수 (교수 수)	수용인원	위치
합 계	155	2,038	-
대전만인산자연학습원	17(4)	158	만인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2(9)	600	대부도
강원도자연학습원	13(6)	150	치악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17(3)	300	속리산
전라북도자연학습원	13(4)	200	덕유산
전라남도환경교육센터	18(4)	300	병풍산
경상북도환경교육연수원	26(6)	150	금오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21(5)	180	지리산
제주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8(3)	-	한라산

※자료: 환경부, 2023년기준

한편,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⁸³⁾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도시화율이 높은 대도시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3)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확대하고자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권한을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장에도 부여하려는 것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을 실시하여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9) 안 부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권한 및 사무 이양을 위한 경과조치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었고,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를 통해 「물환경보전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제1항 및 제2항의 개정⁸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제1항⁸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임.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확인⁸⁴⁾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제7항·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을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1년 6개월의 기간은 권한 및 사무의 이양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으로 생각됨.

또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행정처분에 관해서 주무관청이 변경되거나 새로 통합·신설된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서, 개별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47